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3 선고 2023나103172 판결 [보증채무금]

---

## 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3 선고 2023나103172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2. 9 선고 2022가단32701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, 담당변호사 박희준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, 담당변호사 김진필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우기

변론종결 2024. 4. 5.

판결선고 2024. 5. 3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2. 9. 선고 2022가단32701 판결

## 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 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 
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,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
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 
인용한다.

[추가하는 부분]

- 2022. 10. 20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의 D단체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청구서를  
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, 원고가 주채무자인 D단체에 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을  
청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.
- 피고들은 원고가 2017. 2. 27.경부터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 
있었으므로, 2017. 2. 28.을 기산점으로 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도

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2017. 2. 27.경부터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2017. 2. 28.부터 주채무자인 D단체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 **2. 결론**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